

◆ D-41 노동조합원의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즉, 동법은 회사에서 채용, 해고, 승진 또는 인사이동에 관해서 직접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와, 사용자의 노동관계에 관해서 계획과 방침등의 기밀사항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성의와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관리·감독 및 근로조건의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란 금융권의 경우 과장급이상(영업소장, 지부장 포함)과 총무과, 인사과, 기획실, 감사실, 경리부서 소속직원 및 조합원으로서 성의를 다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임원승용차운전사, 전화교환원, 경비원, 수습기간중에 있는자, 임시직원, 파트타임, 촉탁근로자를 비조합원으로 정하고 있음. 단 위 조합원의 범위는 단체협약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소 신축적임.

【행정해석1】 : 영업소등 일선기관의 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노노법 제2조의 사용자 또는 향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볼 수 있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음. (1989. 7. 16, 노조 01254-9927참조)

【행정해석2】 : 사용자 또는 향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962. 7.2, 법무 810-2869)